

의안번호	2204056
의 퇴 인	인요한의원
회 답 일	2024.11.12.
추 계 번호	24C38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에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를 추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286억원, 2029년 714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4,000억원(연평균 80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3,286	0	0	714	0	4,000	800

주: 1) 보건복지부 기시행 사업인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율 준용

1.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제1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신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설)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신설)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신설)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의무규정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신설) ※ 국가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제2항)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응급장비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율(50%)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동법 제16조제2항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추계는 현행 응급장비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율(50%)을 준용하여 추계함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전체 소요 금액의 50%인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 안 제47조의3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비용은 응급장비 구비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종류 및 개수 등 구비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존 사업을 준용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 자동심장충격기만을 고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각 시설이 응급장비 의무 구비 대상시설이 되고, 대규모점포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각각 8대, 5대, 그 외 시설은 각 1대씩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대규모점포의 경우 현행 의무 구비 대상시설인 ‘철도역사 대합실’의 2023년 설치 현황(1개소 당 8대)²⁾을 준용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이미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개소당 설치 수(1개소 당 5대)를 준용
 - 개정안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을 말하는 데³⁾, 기존 응급장비 의무 구비 대상시설인 철도역사 대합실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함
 - 전통시장(1.2대)과 어린이집(1.0대), 유치원(1.1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1.4대)는 현행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당 설치 대수 현황을 준용하여 시설 당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나,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설치 대수는 현행 유치원과 전통시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참고
 -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설치 대상 시설 수와 시설 1곳당 설치하게 될 응급장비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3년 위원회 검토보고서」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소모품은 설치 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신규 설치 AED 수) 개정안에 따른 각 시설 당 설치할 자동심장충격기 수를 곱한 후 기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수를 차감
 - (설치 시설 수)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시설 수는 총 282,930개소⁴⁾
 - 구비 대상 시설 수는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
 - (시설 당 필요 AED 개수) 대규모 점포 8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대, 그 외 시설의 경우 1대씩 설치
 - (신규 AED 개수) 전체 필요 AED 수인 293,026대에서 기설치 AED 수(7,309대)를 차감한 285,717대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는 심장자동충격기 자율설치 시설이므로 심장자동충격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다만, 전통시장,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경우 기설치 현황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심장자동충격기 자율설치 시설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기설치 현황이 실제 설치 개수보다 과소집계 가능성이 있음⁵⁾

4) 전통시장의 경우 2022년 연도말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취합)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터넷에 신고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 각 기관명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아 기관명으로 시설 구분을 식별하기 어려워 전체 시설 수를 파악하기 곤란함

[표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현황(2023년 기준) 및 개정안에 따른 신규 설치 대수
(단위: 대)

구분	전체 개소수 (A)	시설 당 AED 개수 (B)	필요 AED 개수 (C=AxB)	기설치 개수 (D)	AED 신규 설치 개수 (E=C-D)
노인복지시설	93,056	1	93,056	—	93,056
장애인복지시설	4,007	1	4,007	—	4,007
사회복지시설	133,783	1	133,783	—	133,783
대규모점포	1,200	8	9,600	—	9,600
전통시장	1,388	1	1,388	249	1,139
어린이집	28,954	1	28,954	136	28,818
유치원	7,954	1	7,954	247	7,707
초·중·고·교육법 상 학교	12,164	1	12,164	6,255	5,909
고등학교·교육법 상 학교	424	5	2,120	422	1,698
합계	282,930		293,026	7,309	285,71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 (구비 단가) 조달청 나라장터와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는 23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은 5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⁶⁾

○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소모품은 설치 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286억원, 2029년 714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4,000억원(연평균 800억원)으로 추계됨

6) 자동심장충격기는 업체와 모델마다 가격이 상이하나, 본 추계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자동심장충격기 가격이 200~240만원(보관함 포함)인 점과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 자동심장충격기 단가가 250만원인 점을 고려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총 재정소요(A)	6,571	0	0	1,429	0	8,000	1,600
국고보조율(B) ¹⁾	50%						
추가재정소요(A×B)	3,286	0	0	714	0	4,000	800

주: 1) 보건복지부 기시행 사업인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율 준용

1.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